

〔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8년 08월 28일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8년 08월 28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09월 04일(제1차 총무위원회)
- 의안번호 : 제2008 - 38호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08년도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선정 계획에 응모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하여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프장 규모 : 9홀 규모(325,000m², 가조면 도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3년까지(5년간)
- 사업방식 : 지자체 토지제공, 공단건설(인허가 포함) 및 운영
 - ※ 시설 : 조성 후 즉시 지자체 기부체납
- 사업비(추정) : 210억원 정도(공단 140억원, 군비 70억원)
 - ※ 공단에서 150억원까지 투자

4. 법적근거

-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계획

5.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 후보지 선정 계획에 의거 우리 거창군이 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후보지 추천 신청서 제출서류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공에 대한 의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임.

- 이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및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50억원 한도 내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운영은 투자비 회수 시까지로 한정하고, 원금을 회수 한 후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사업임.
-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중에서 총투자비를 20년간 균분한 금액만 공단이 매년 회수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 우리 군 사업계획서 Ⅱ. 사업타당성 분석 중 골프장 수요 분석에서
 - 골프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경상남도 및 1시간 이내 골프장을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34개소, 건설 중 6개소 등 총 40개소로 파악하고 있고,
 -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 1일 평균 골프장 이용객에 비하여 현재 골프장 40개소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9홀 골프장 5개소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대중골프장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 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런데 사업계획서에서 분석한 골프장 40개소 외에 경남 도내에 현재
 - ⇒ 건설 중인 골프장이 함양, 창녕, 의령, 밀양 등 11개소
 - ⇒ 인가 준비 중인 골프장이 의령, 함양 등 9개소로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것을 볼 때 골프장 수요분석에서 2014년에 43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이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 됨.
- 따라서 도내 및 인근의 골프장이 분석하고 있는 것보다 초과함으로 골프장 건립의 입지적 여건, 골프인구의 수요 분석, 예산투자규모,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보상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심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